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895

발의연월일: 2020. 12. 23.

발 의 자:김승남·강득구·김영호

신정훈 · 김회재 · 이개호

박완주 • 이용빈 • 송갑석

윤영덕 · 인재근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의 농업은 우수한 종자를 얼마나 확보하여 산업화시킬 수 있는 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되고 식량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우리나라 종자 산업은 1997년 IMF를 겪으며 대표적인 국내 종자 업체들이 다국적기업에 매각되면서 위기를 맞았고, 이후 정부는 Golden Seed 프로젝트(GSP) 추진 등을 통해 부흥을 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종자 산업이 세계 종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내외로 여전히미약한 실정임.

국가는 종자의 품종개발 관련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추진으로 기초연구 결과를 축적하고 이를 종자 업계가 응용하여 품종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영세한 종자 업계에 대해서는 종자가공처리시설, 검정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종자 산업의 기초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종자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채소, 과수, 화훼 등의 원예종자와 묘 관련 종자산업계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협회의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 되고 있음.

이에 채소, 과수 등의 원예종자와 묘 관련 종자산업계를 지원하는 한국종자협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협회가 종자 산업계에 지원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한국종자협회의 설립 등) ① 종자산업을 하는 자는 종자 및 묘 관련 산업계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한국종자협회(이하"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 다.

-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④ 협회는 종자 및 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종자산업 관련 통계작성, 실태조사,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2. 우수·신품종 종자와 묘의 생산을 위한 시험포장, 검정시설 및 가 공시설 지원
- 3. 종자의 수급조절을 위한 보세창고 등 수출입 물류센터 지원
- 4. 병해충 방제를 위한 종자와 묘에 대한 소독 및 살균처리 시설 지원
- 5. 종자와 묘의 품질향상 및 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회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종자협회 설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종자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종자

협회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한국종자협회의 설립
	등) ① 종자산업을 하는 자는
	종자 및 묘 관련 산업계를 전
	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
	아 한국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
	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는 종자 및 묘에 관하
	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종자산업 관련 통계작성, 실
	태조사, 홍보 및 마케팅 지원
	2. 우수·신품종 종자와 묘의 생
	산을 위한 시험포장, 검정시
	설 및 가공시설 지원
	3. 종자의 수급조절을 위한 보
	세창고 등 수출입 물류센터
	<u>지원</u>
	4. 병해충 방제를 위한 종자와

- 묘에대한소독및살균처리시설지원
- 5. 종자와 묘의 품질향상 및 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업무
-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업 모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회 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 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